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

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 력 ¹⁾	자격요건 확인결과
장진아	부장	부	840408	2020. 04.01	2023. 03.31	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	-	「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 38조에 따 른 검사 대 상 기관(이 에 상당하 는 외국금 융 회 사 를 포함한다) 에서 10년 이상 근무	자격 有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[주요경력 상세]

- * 아이온자산운용 2019.09 ~ 현재
- * 아너스자산운용(주) 2016.10 ~ 2017.06 헤지펀드운용본부/경영관리 총괄
- * 프렌드홀딩스(구, 프렌드투자자문) 2013.01 ~ 2016.10 운용지원팀/운용지원총괄
- * 유경PSG자산운용(구, 드림자산운용) 2010.02 ~ 2012.12 주식운용본부/리서치 및 트레이딩
- * 한셋글로벌(주) (구, 한셋투자자문) 2007.03 ~ 2010.02 주식운용팀/운용지원
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

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일	해임사유 ¹⁾	비고 ²⁾
이경훈 (李敬薰)	850325	2016.12.05 (최초선임 일)	2020.03.31	일신상의 사유	선임완료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장진아 (張珍兒)	직위	부장
심사항목		심사결과	
<p>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</p> <p>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</p> <p>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</p>		<p>해당 사항 없음</p>	
<p>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</p>		<p>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(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)에서 10년 이상 근무에 해당</p> <p>* 아이온자산운용 2019.09 ~ 현재</p> <p>* 아너스자산운용(주) 2016.10~2017.06 헤지펀드운용본부/경영관리 총괄</p> <p>* 프렌드홀딩스(구, 프렌드투자자문) 2013.01~2016.10 운용지원팀/운용지원총괄</p> <p>* 유경PSG자산운용(구, 드림자산운용) 2010.02~2012.12 주식운용본부/리서치 및 트레이딩</p> <p>* 한셋글로벌(주) (구, 한셋투자자문) 2007.03~2010.02 주식운용팀/운용지원</p>	
<p>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</p>		<p>(겸직 금지 등) -해당사항 없음-</p> <p>1.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</p> <p>2.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(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) 및 그 부수업무</p> <p>3.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(兼營)업무</p> <p>4.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(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5.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p>	
<p><u>종합 의견</u></p> <p>위 심사항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함</p>			
<p>2020년 04월 02일</p> <p>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장진아 </p> <p>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형 (인) </p>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장진아 (張珍兒)	직위	부장
심사항목		심사결과	
<p>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</p> <p>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</p> <p>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</p>		해당사항 없음	
<p>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</p>		<p>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(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)에서 10년 이상 근무에 해당</p> <p>* 아이온자산운용 2019.09 ~ 현재 * 아너스자산운용(주) 2016.10~2017.06 헤지펀드운용본부/경영관리 총괄 * 프렌드홀딩스(구, 프렌드투자자문) 2013.01~2016.10 운용지원팀/운용지원총괄 * 유경PSG자산운용(구, 드림자산운용) 2010.02~2012.12 주식운용본부/리서치 및 트레이딩 * 한셋글로벌(주) (구, 한셋투자자문) 2007.03~2010.02 주식운용팀/운용지원</p>	
<p>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</p>		<p>(겸직 금지 등) -해당사항 없음-</p> <p>1.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</p> <p>2.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(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) 및 그 부수업무</p> <p>3.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(兼營)업무</p> <p>4.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(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5.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p>	
<p><u>종합의견</u></p> <p>위 심사항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 함</p>			
<p>2020년 04월 02일</p> <p>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위험관리인 장진아 (인)</p> <p>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우형 (인)</p>	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